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7. 8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



- 1. 건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- 2. 근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28조제4항, 행정절차법 제14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방O지	98. 01. 03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부담 이득금 반환처분 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환수처분	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(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)에 미해당 되는 자에게 지급된 취업성공수당 환수	취업성공수당 부담이득액 (1회차) 총 500,000원 반환	보관기간 경과	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7길

- 4. 공고기간 : 2024. 7. 8. ~ 2024. 7. 26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경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손은철(☎ 053-667-685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